

국무총리 지시 제 2 호

(73-0105)

1973. 3. 23.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수산방조제 긴급복구에 관한 지시

1. 보고된 바에 의하면 1940년에 건설된 전북 옥구군

옥구면 수산리의 수산방조제 (4,500미터)의 고수부지가 조수의 영향으로 급격히 침식되고 있어 4월 중순 및 5월 중순의 대조사에는 방조제 마저 붕괴가 우려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복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.

2. 수산방조제가 붕괴 유실되는 경우 방조제 내에 있는 염전 100정보, 농경지 990정보, 가옥 400호 등 787백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다음

가. 지사 책임하에 전라북도가 수산방조제를 긴급복구 토록 할 것.

나. 소요 긴급복구비 138백만원 중 기투자된 지방비 22백만원을 제외한 116백만원은,

- (1) 농림부 가 농지기반조성비에서 50 백만원,
- (2) 건설부 가 일반하천 개수비에서 25 백만원,
- (3) 내무부 가 특별교부세에서 25 백만원을 각각 엄출하여 충당하고 잔여 16 백만원은 전라북도가 수익자로 부터 징수 조달하도록 할것.

다. 경제기획원은 농림부, 건설부,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100 백만원의 예산 지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3. 24 일 까지 완료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추가 소요자금 100 백만원은 1974년도 국고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것.

수신처 : 가 (10. 12. 19. 21. 22) 나 (7)

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리